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9월 25일

발의자 : 경수현, 김육영, 소형준, 양순임,
이용진, 임태근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「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예산낭비 방지 방
안」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
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
함.

2. 주요내용

-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
사항을 개정하고 각 호를 신설 함(안 제7조제2항)
- 경고 또는 사과 징계에 대한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 함(안 제7조제3
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5. 9. 30. ~ 2025. 10. 4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출석정지 징계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”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 제2조,”로, “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
제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”를 “제1항의 공소가 무죄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”로 한다.

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

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
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
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
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<u>출석</u> 정지 <u>징계</u>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<u>출석</u> 정지기간에 월 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<단서 신설></p>	<p>제7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 정지 징계--- 경우 제2조, ---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</p> <p>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</p>
<p><신 설></p>	

<신 설>

<신 설>

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
르지 아니하였을 때

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
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제2항
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
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
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
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
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, 이미 지
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
다.

(4) -- 제1항의 공소가 무죄 또는
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-